

부 칙

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

제6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제1항·제2항,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전기판매사업자”는 “구역전기사업자”로 본다.

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2조의2(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) 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.

제96조의2제1항중 “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”를 “안전공사,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”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.

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

제3조(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전기사업”이라 함은 발전사업·송전사업·<u>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전기사업자”라 함은 발전사업자·송전사업자·<u>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</u>를 말한다.</p> <p>3. ~ 10. (생략) 〈신설〉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배전사업·전기판매 사업 및 구역전기사업</u>을-----.</p> <p>2. -----<u>·배전사업자·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</u>를-----.</p> <p>3.~10.(현행과같음)</p> <p>10의2. “<u>구역전기사업</u>”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하는사업을 말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 <p>11. ~ 19. (생 략)</p> <p>제7조(사업의 허가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<u>사업구역별로</u>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⑤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<u>배전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</u></p> <p>〈신 설〉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⑥ (생 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제19조(전력량계의 설치·관리)</p> <p>①다음 각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10의3. “구역전기사업자”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말한다.</u></p> <p>11.~19.(현행과같음)</p> <p>제7조(사업의 허가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<u>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</u>-----</p> <p>⑤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-----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-----.</u></p> <p>3의2. <u>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,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의2(<u>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</u>) ①<u>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<u>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③<u>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(이하 “보완공급약관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p>④<u>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.</u></p> <p>제19조(전력량계의 설치·관리)</p> <p>①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2. (생 략) 〈신 설〉</p> <p>3. 4. (생 략) ② (생 략) 〈신 설〉</p> <p>제27조(송전사업자등의 책무) <u>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</u>는 전기의 수요·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29조(전기의 수급조절등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·지변·전시·사변,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특정한 <u>전기판매사업자</u>에 대한 전기의 공급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특정한 <u>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</u>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</p> <p>제31조(전력거래) ①·② (생 략) 〈신 설〉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34조(차액계약) 발전사업자는 <u>전기판매사업자</u>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</p>	<p>1.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<u>구역전기사업자</u>(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)</p> <p>3. 4.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4조의2(<u>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</u>)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<u>구역전기사업자</u>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 <p>제27조(송전사업자등의 책무) <u>송전사업자·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</u>는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9조(전기의 수급조절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전기판매사업자·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</u> -----</p> <p>제31조(전력거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<u>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제34조(차액계약) ----- <u>전기판매사업자,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9조(회원의 자격)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 ①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<u>기본공급약관</u>의 인가에 관한 사항</p> <p><신설></p> <p>6. ~ 1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6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</p> <p>① ~ ⑨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96조의2(보고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·점검현황 등 전기안전 관한 사항을 시·도지사,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9조(회원의 자격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4의2.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<u>구역전기사업자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 ①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-----기본공급 약관 및 보완공급약관 의-----</p> <p>5의2.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<u>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</u>의 인가에 관한 사항</p> <p>6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6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</p> <p>①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제1항·제2항,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<u>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전기판매사업자”는 “구역전기사업자”로 본다.</u></p> <p>제92조의2(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)</p> <p>①<u>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<u>제1항의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.</u></p> <p>제96조의2(보고) ①----- ----- ----- -----<u>안전공사,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